



제1697호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훈 령

○ 훈 령 제 3 9 8 호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감 사 실 2

공 고

○ 공 고 제 1 4 6 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1
 ○ 공 고 제 1 4 7 4 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7
 ○ 공 고 제 1 4 7 8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처분사
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39
 ○ 공 고 제 1 4 8 9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 통보 자 동 차 관 리 과 41
 ○ 공 고 제 1 4 9 5 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
고 자 동 차 관 리 과 43
 ○ 공 고 제 1 4 9 7 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남촌도립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 시 재 생 과 45
 ○ 공 고 제 1 4 9 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방 재 하 수 과 46
 ○ 공 고 제 1 5 0 0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54
 ○ 보 건 소 공 고 제 7 7 호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식 품 위 생 과 55
 ○ 보 건 소 공 고 제 7 8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식 품 위 생 과 57

고 시

○ 고 시 제 8 0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58
 ○ 고 시 제 8 1 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방 재 하 수 과 61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훈 령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2년 8월 11일

남동구 훈령 제398호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 다.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청장에게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실에 설치하며 각 업무 소관부서에도 공익신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책임관의 역할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직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부서 등의 배정,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8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단, 법 제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 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공익신고 배정 및 확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 또는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를 그 내용에 따라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구의 부서 또는 소속기관으로 배정한다.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익신고도 포함한다.

② 공익신고를 배정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익신고의 사실 확인, 조사 등의 처리, 보호·보상제도 안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담당관은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구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
4.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④ 담당관은 공익신고 사항의 내용이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공익신고 책임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 기관에 이송한 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일반민원으로 접수한 후 공익제

보자에게 통지

3.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담당관과 협의하여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6조(공익신고기록) ① 담당관은 배정받은 신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담당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 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책임관 및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축·운영하는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익신고 접수, 배정, 보완 요청, 타기관 이송, 처리 결과 등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7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담당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담당관은 구에서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 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④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담당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담당관은 배정받은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담당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

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책임관 및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구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

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1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직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직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내용 등을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구청장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3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직자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

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직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신변보호 안내) 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직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익신고자 보호) 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0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31조(협조 등의 요청)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1월 1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2]

공 익 신 고 접 수 관 리 대 장

[illegible]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3]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 공 익 제 호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공 익 침 해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남동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 수 번 호 20 공 익 제 호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신 고 제 목

신 고 자

위 와 같 이 공 익 침 해 행 위 에 대 한 신 고 사 항 을 접 수 하 였 습 니 다 .

20 년 월 일

남동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4]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남동구의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남동구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확인담당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부동의 2. 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기관에 이송되거나 타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 [] 동의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5]

대표신고자 선정서

대표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아래의 신고자들은 공익신고 접수에 대하여 위 사람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고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수령 등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년 이후

신고자 : 명

남 동 구 청 장 귀하

선정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1. 대표신고자의 신분증 사본
2. 선정자들의 신분증 사본

작성 방법

1. 앞쪽의 선정자 명단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선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6]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담당자	공익신고 담당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 담당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7]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10조 제5항)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9]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0]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 내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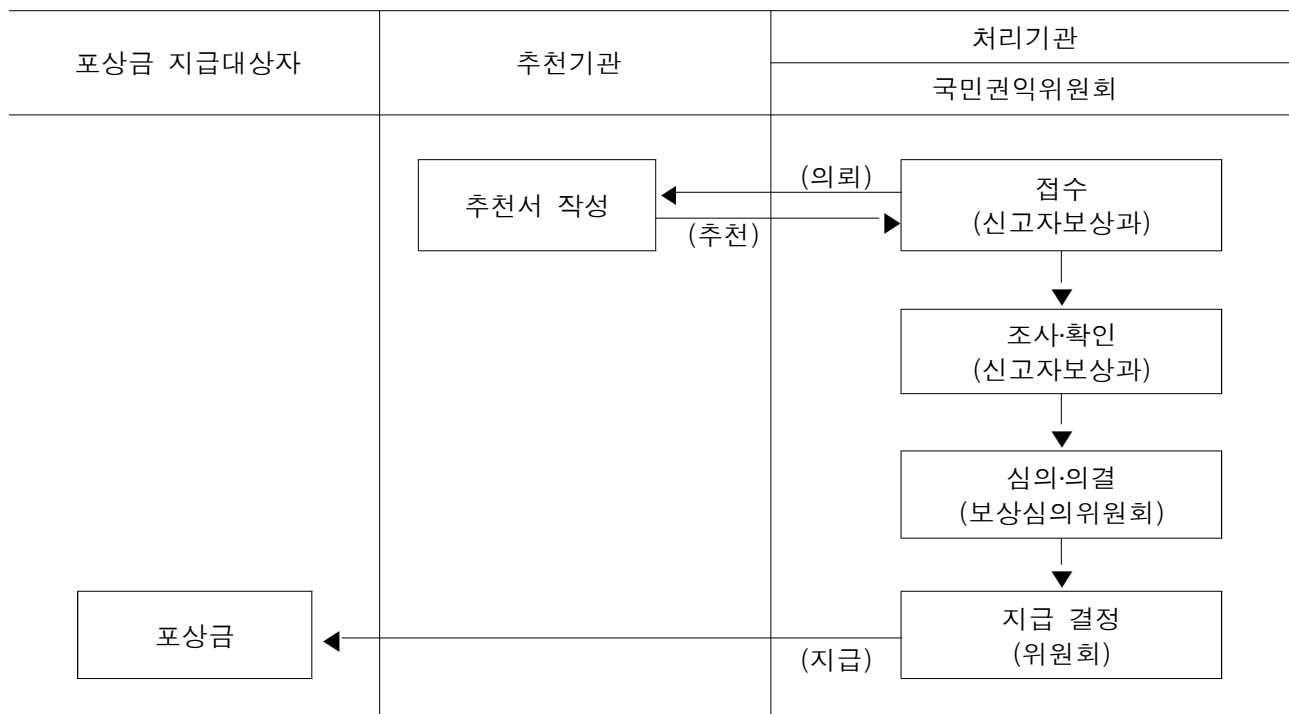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과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와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서식 11]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시요.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법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공익신고 처리방법과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익신고 정의, 적용 범위, 자체 교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공익신고 상담, 공익신고의 접수절차, 공익신고 배정 및 확인, 보완의 요구, 신고의 취소,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 공익신고의 조사, 이송, 종결 및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변보호, 징계 등의 감면, 구제절차 안내 및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신청 안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 별지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제11호서식)

공 고

남동구청 제2022-146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3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8.3. ~ 2022.8.18.
3. 공고대상 : 이륜차 12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14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승남로 33번길 23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	2022.6.30.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2-0014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성말로53번길9-1	2022.7.15.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2-0015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피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2-0015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피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2-0016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피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2-00161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피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7	2022-0016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피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2-0016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피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9	2022-0016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함박피로 439 지하주차장	2022.7.20.	(주)인천폐차사업소	
10	2022-0016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68-89 인도 위	2022.7.19.	(주)인천폐차사업소	

제1697호

남동구 구보

2022. 8. 11. 목요일

11	2022-0016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701(은봉초등학교 버스정류소 옆) 인도 위	2022.7.19.	(주)인천폐차사업소	
12	2022-00172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은봉로105번길57 (주)제이에이치테크놀로지 앞 전봇대(8717D454)	2022.7.19.	(주)인천폐차사업소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147  2022년 6월 3일 금요일 09:34:54 6 4 4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3. ○ 견인일 : 2022.6.3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장승남로 33번길 23 103동 지하주차장 입구
	2022-00149  2022년 6월 9일 목요일 18:39:43 6 4 4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9. ○ 견인일 : 2022.7.15.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성말로53번길9-1
	2022-00158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10:13:31 6 4 4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59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10:14:08 6 4 4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0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10:16:23 6 4 4 남동구 인천광역시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관
리
번
호

2022-0016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1.
- 견인일 : 2022.7.2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함박외로 439 지하주차장

2022-0016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2.
- 견인일 : 2022.7.1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68-89 인도 위

관 리 변 화	2022-00168	 2022년 8월 22일 수요일 15:42:24 견인장역사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2. ○ 견인일 : 2022.7.1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701(은봉초등학교 버스정류소 옆) 인도 위
	2022-00172	 2022년 8월 22일 수요일 15:23:16 견인장역사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6.22. ○ 견인일 : 2022.7.1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은봉로105번길57 (주)제이에이치테크놀로지 앞 전봇대(8717D454)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474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 분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5. ~ 2022. 8. 20.
3. 공고대상 : 18노4994 외 10대 (별첨)
4.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또는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니 자동차 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자동차 사용자라 한다) 및 실제운행자는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운행정지 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 자동차 사용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면서 자동차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체납, 과속·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등 의 지속)을 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문의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1)

2022. 8. 5.

남 동 구 청



제1697호

남동구 구보

2022. 8. 11. 목요일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등록일	등록사유
1	18노4994	BMW 520d xDrive	이*현	2022.07.21	소유자 요청
2	61하0715	싼타페(SANTAFE)	신한카드 주식회사	2022.07.20	소유자 요청
3	40가2647	쏘렌토	이*훈	2022.07.20	소유자 요청
4	145하9684	A6 45 TDI quattro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7.20	소유자 요청
5	51주8798	SM7	송*숙	2022.07.18	소유자 요청
6	150호7171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주)	2022.07.14	소유자 요청
7	41서4549	PRIUS HYBRID	정*철	2022.07.06	소유자 요청
8	364머5681	E300 4Matic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2022.07.06	소유자 요청
9	62다9023	마칸 S 디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2022.07.06	소유자 요청
10	18호2955	아반떼 스포츠(AVANTE SPORT)	신한카드(주)	2022.07.05	소유자 요청
11	104노6759	그랜저(GRANDEUR)	신한카드(주)	2022.07.01	소유자 요청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4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9. ~ 2022. 8. 23.(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의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김*수	인천99아**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67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안*울	인천82바**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62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숙	인천85사**0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64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능	인천81바**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62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춘	인천99아**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춘	인천99아**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배*열	인천86바**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70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강*진	인천84바**2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찬	인천82바**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489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8.8.~ 2022.8.23.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83다3106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

2022년 8월 8일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대상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 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1-00147	83다3106	포터Ⅱ슈퍼캡 하이내장탑차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12 성화그린 201동 주차장	진**업 (주)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8길 16-12, (서초지점)(양재동)	2021.4.30.	(주)인천폐차 사업소	032-814-7077

공 고

남동구청 제2022-1495호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사망말소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8.9. ~ 2022.8.24.
3. 공 고 대 상 : 56나7314
4.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차장에 견인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회수 및 폐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매각) 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86조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자진처리 이행:20~30만원, 자진처리 불이행: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에 불응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사망말소자)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1	2022-00190	56나7314	올란도 2.0 디젤	서창동 234 이면도로	박현관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187번길 33, B동 201호(중동, 형진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49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남동구 고시 제2022-37호(2022.05.06.)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공사)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8. 11.

남 동 구 청 장**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54-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칭: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 사업규모

- A=1,000.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장(재무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일

- 2022.05.06. ~ 2022.06.30.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49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나.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

다. 위 치 : 남동구 도림동 440-9번지 ~ 도림동 621-1번지 일원

라. 사 업 개 요 : 소하천 정비 L=610m, 교량 5개소 등

2. 출입목적 : 편입 토지측량(분할),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등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1 참조

4.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시행자, 측량업자, 감정평가사, 사업 관련 공무원 등)

5.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 종료 시까지

6. 기타사항 : 기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032-453-8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용지집계표

구분	총계		국·공유지		사유지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필지	면적(m²)
계	31	11,298	2	3,632	29	7,666
전	19	6,848	-	-	19	6,848
답	1	172	-	-	1	172
도	4	1,466	1	1,409	3	57
임	5	541	-	-	5	541
구	1	2,223	1	2,223	-	-
잡	1	48	-	-	1	4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호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시·구	읍·면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사 유 지				29필지		7,666								
	국·공유지				2필지		3,632								
	총 계				31필지		11,298								
1	남동구	도림동			440	10	임	1,117	102	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 ***동 ***호 (송도동 아이파크송도)				
2	〃	〃			440	11	임	1,133	154	전*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논현동)				
3	〃	〃			443	2	전	3,069	168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4층				
4	〃	〃			449	3	전	2,327	1	이*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6 가좌마을용담이편한세상 ***동 ****호				
5	〃	〃			462	2	답	407	172	강*갑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타운 ***-****				
6	〃	〃			462	6	전	1,871	358	최*일	남촌동 649 풍림아파트 ***동 ****호				
7	〃	〃			462	9	전	1,000	164	박*태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20 ***동 ****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8	〃	〃			462	10	전	1,392	198	권*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동***호(논현동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9	〃	〃			462	17	전	2,122	532	이*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 ***동 ***호(괴안동 범박휴먼시아1단지)				
10	〃	〃			462	18	전	2,568	460	조*철	구월동 ***-*				
11	〃	〃			462	20	전	3,164	602	김*현	부평구 산곡동 255-1 뉴서울아파트 ***동 ****호				
12	〃	〃			462	21	전	2,172	504	고*문	인천 남동구 만수동 ****-***				
13	〃	〃			462	29	전	1,488	343	문*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동 ****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14	〃	〃			462	33	도	36	31	이*구	서울 성동구 신당동 *-***				
15	〃	〃			462	35	전	1,485	63	박*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43 ***동 ****호(부평동 부평엘에이치2단지)				
16	〃	〃			462	42	전	629	80	박*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74번길 ** (작전동)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호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	"	"			462	43	전	1,157	160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동 ***호(연수동, 경남아파트)				
18	"	"			463		전	6,387	1,787	박*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8-1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_****				
19	"	"			584	8	전	3,203	455	이*우	남구 도림동 ***				
20	남동구	도림동			584	11	전	2,413	358	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_*				
21	"	"			584	19	전	1,203	183	지*복	연수구 선학동 353 아자아파트 ***동 ****호				
22	"	"			584	59	도	26	23	이*필	***				
23	"	"			584	102	잡	414	48	지*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50 ***동 ****호 (하왕십리동 청계벽산아파트)				
24	"	"			585	1	전	2,444	117	김*자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마을풍림아파트 ***_****				
25	"	"			585	2	도	218	3	윤*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0 연화마을휴먼시아8단지 ***_****				
26	"	"			592	1	전	2,733	315	천*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9-1 현대아파트 ***_****				
27	"	"			617		도	16,573	1,409	국(건설부)					
28	"	"			621	1	구	2,676	2,223	국(기획재정부)					
29	"	"			산85	6	임	330	9	배*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8 태평아파트 ***_****				
30	"	"			산87	5	임	13,223	249	강*석	논현동 ***_*				
31	"	"			산87	9	임	219	27	윤*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도림동) ***_**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및규격	면적(m2) 길이(m)	단위	수량	주소	성명	비고
	시	구	동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0-10	한전주				본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 ***동 ***호 (송도동, 아이파크송도)	이*자	
		"	"	"	펜스		검정 메쉬천 (H = 2m)	33.7m					
		"	"	"	출입문		철제 (H = 2m)	2.2m					
		"	"	"	느릅나무				주	2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0-11	사철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번길 ** (논현동)	전*진	
					벙나무				"	2			
					솔비나무				"	2			
					참나무				"	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3-2	한전주				본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4층	이*숙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	소나무				주	75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타운 ***-***	강*갑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6	한전주				본	1	남춘동 649 풍림아파트 ***동 ****호	최*일	
					출입문		철문	5.2m X 2m		1			
					무궁화				주	1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4.0㎡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20, ***동 ****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박*태	
					출입문		철제 (H = 2m)	3.0m					
					펜스		철제메쉬 (H = 2m)	21.6m					
					정원수				주	1			
					오가피				"	2			
					사시나무				"	2			
					사과나무				"	1			
					개나리				"	15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10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동***호(논현동,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권*정	
					펜스		철제메쉬 (H = 2m)	12.0m					
					출입문		철제 (H = 2m)	3.0m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17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1.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 ***동 ***호(괴안동, 범박휴먼시아1단지)	이*우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8.2㎡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8.1㎡					
					한전주				본	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및규격	면적(m ²) 길이(m)	단위	수량	주소	성명	비고
	시	구	동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18	오가피				주	7	구월동 ****-*	조*철	
					꽃나무				"	10			
					배나무				"	2			
					꾸지뽕나무				"	3			
					엄나무				"	13			
					매화나무				"	22			
					뽕나무				"	2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0	구조물		판넬	33.4㎡			부평구 산곡동 255-1 뉴서울아파트 ***동 ****호	김*현	
					밤나무				주	1			
					포도나무				"	9			
					배나무				"	20			
					오가피나무				"	3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1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97.0㎡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고*문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68.1㎡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2.2㎡					
					한전주				본	2			
					물탱크				"	1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동 ****호(송도동, 더센트럴파크2)	문*희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7㎡					
					구조물		판넬	19.9㎡					
					구조물		판넬	9.9㎡					
					자작나무				주	2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35	출입문		철제 (H = 2m)	5.2m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 43, ***동 ****호(부평동, 부평엘에이치2단지)	박*근	
					펜스		철제메쉬 (H = 2m)	8.7m ×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42	구조물		판넬	24.9㎡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74번길 ** (작전동)	박*미	
					출입문		철제 (H = 2m)	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및규격	면적(m2) 길이(m)	단위	수량	주 소	성명	비고
	시	구	동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3	출입문	출입문	4.5m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8-1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	박*용	
					조경석				개	45			
					구조물	원두막		8.8	m ²				
					구조물			33.4	m ²				
					구조물	닭장		13.3	m ²				
					관정	지하수 시설		1.0	m ²				
					비닐하우스			32.2	m ²				
					화양목				주	30			
					소나무					67			
					측백나무					339			
					주목					5			
					철죽					280			
					단풍나무					1			
					사철나무					3			
					향나무					4			
					보리수					1			
					소사나무					8			
					백일홍					2			
					능소화					3			
					복숭아					1			
					화살나무					14			
					느티나무					17			
					공작단풍					2			
					모과나무					4			
					상수리나무					3			
					간이화장실			1.4	m ²				

일련 번호	소 재 지 시 구 동	지 번	지장물명	용 도	구조및규격	면적(m2) 길이(m)	단위	수 량	주 소	성 명	비 고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8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270.8㎡			남구 도림동 ***	이*우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64.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7.3㎡					
			구조물		판넬	46.5㎡					
			느릅나무				주	2			
			소나무				"	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11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한*순	
			참나무				주	12			
			철엽수				"	5			
			배나무				"	12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1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99.6㎡			연수구 선학동 353 아жу아파트 ***동 ****호	지*복	
24		584-102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9.5㎡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85-6	참나무				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8 태평아파트 ***-***	배*호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87-5	밤나무				주	7	논현동 ***-*	강*석 외3 인	
			참나무				"	12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1500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지난 7. 10.(일) 중부고속도로(호법분기점 인근)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하는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개인)

2.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제2호 및 제3호

3. 개선명령 사항

-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에 실린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판스프링 등) 및 공구류(스패너·렌치 등)가 운행 중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도구함(적재부에 고정된 것을 말함)에 넣고 덮개를 하여야 한다.(덮개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해야 한다)
-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사항을 철저히 조치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안내)을 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시행일) 공고일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5.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 제한 (법 제3조제8호제1호)
- (사업상 제재)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 2차 사업 전부정지 60일 / 3차 허가 취소 * 법 제19조, 시행령 제5조 별표1
- (과징금) 사업상 제재 중 1차, 2차 위반은 과징금으로 갈음 가능
 - 1차(일반 300만원 / 개인 150만원), 2차(1차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 중액)
 - * 법 제21조, 시행령 제7조 별표2
- (과태료) 300만원(위반차수 관계없이 동일) * 법 제70조, 시행령 제16조 별표5
- ※ (주의) 사업상 제재(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법 제71조)

2022. 8. 10.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77호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 명령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폐문부재,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장

- 아 래 -

1.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위반 과태료부과 알림
2. 공고기간 : 2022. 8. 9. ~ 2022. 8. 31.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위반 동법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4. 당사자 및 과태료 대상

업 종	업소명	영업주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역	처분내역
미용업	머리쟁이	변*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306 , 1층 103호 머리쟁이 (구월동)	2021년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60만원

5. 공고내용

- 위 대상자는 각 납기일자까지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 납부 가능)
- 만약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며, 그 후 매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최고 60개월, 72%)이 추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032-453-2633~4)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2-78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 8. 9.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9. ~ 2022. 8. 23. (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휴게음식점	2020-0202098	카페407	이**	인주대로676번길 18, 동아아파트상가 2층 203호(구월동)	-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처 분 일 : 2022. 8. 8.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8.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1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2-8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5일

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12 (간석동) 외 1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7-12 (만수동)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2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 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33-6, 233-10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12 (간석동)	2009.7.10.	인천에서 옥고를 치르고 부두에서 노역을 한 바 있었던 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호를 따 명명	2022.8.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 41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12 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4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97번길 43 (고잔동)	2009.11.16.	남동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8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2.8.5.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동로 197번길 4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43 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7-12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7-3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5-2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8-7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부로6번길 8-3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41-3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41-9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39 (만수동)	2022.8.5.	건축물대장 말소로 인한 폐지	

고 시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2-81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도립동 소곡 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남동구청 방재하수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9일

남 동 구 청 장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예정)	준공 (예정)		
소곡천	도림동 소곡 소하천 정비사업 (1단계)	남동구 도림동 440-9	남동구 도림동 621-1	좌안: 611 우안: 409	좌안: 611 우안: 409	교량 5개소, 배수통관 10개소, 배수암거 1개소	2023.8.	2025.12.	소하천 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세부 시행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2.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정비사업의 목적

- 남동구 관내 소하천인 소곡소하천은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근 농경지 유실 등의 침수피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소하천 인근 치수 안전도 유지 확보를 통한 방재하천으로 정비하여 향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사업 개요

공 종	주요사업내용					
축 제 공	▶ 축제 L=1,021m ▶ 흙쌓기 5,503m³, 흙깎기 3,854m³					
호 안 공	▶ 식생옹벽블럭 A=3,145m²					
배수구조물공	▶ 배수통관 10개소, 배수암거 1개소					
포 장 공	▶ 제방둑마루 콘크리트포장L=1,020.7m, 부채도로 14개소					
교 량 공 (5개소)	교량명	측 점 (No.)	계획 하폭 (m)	계획제원(m)		계 획 사 유
				연장	폭	
	소곡1암거	30+11.13	12	12	41	여유고 부족
	소곡1교	27+1.08	12	12	7	"
	소곡2교	22+16.08	12	12	7	"
	소곡3교	9+18.54	6.6	6.6	7	"
	소곡4교	3+12.56	5	5	7	"
부 대 공	▶ 1식					

3.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남동구청장 (방재하수과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4.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2023. 8. ~ 2025. 1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붙임3)

-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6.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붙임2)

- 남동구 도림동 440-9번지 ~ 남동구 도림동 621-1번지

7. 실시설계도서

-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열람 가능

8.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공 종	일 정 보합(%)	공 사 기 간												비 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4개월	16개월	18개월	20개월	22개월	24개월	
축 제 공	10.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호 안 공	28.94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3.22		
교 량 공	33.70		5.62	5.62	5.62	5.62	5.62	5.62						
구조물공	3.41		0.49	0.49	0.49	0.49	0.49	0.49	0.49					
부채도로공	0.26								0.26					
부 대 공	9.51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79	0.69	
계	월별	0.79	8.03	11.25	11.25	11.25	14.66	14.66	5.89	8.76	8.76	4.01	0.69	
	누계	0.79	8.82	20.07	31.32	42.57	57.23	71.89	77.78	86.54	95.30	99.31	100.00	

9.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	비고
7,689.5	1,512.5	1,112	5,065	

10.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남동구청장 (방재하수과장)

11.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발생 예상 면적

- 해당없음

12. 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 실시설계도서 참조
-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실시설계도서 참조

13. 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사 : 붙임 참조
 - 나) 보상시기 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22년 ~ 2023년 (예정)
 - 보상절차 및 방법 : 남동구청 방재하수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에 산출평균
- ※ 보상계획공고 : < 추후 공고예정 >

14.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결과(붙임1)

- 협의의견 : 동의

15. 기타사항

- 기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방재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2-453-8414)

[붙임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 의 의 건 서

사건번호	22의제1128	사업명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
인허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근거법률	소하천정비법	사업기간	2022. 06. 13. ~ 2025. 12. 31.
사업유형	소하천등 정비사업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위원회 의결	2022. 07. 07.	면적	11210㎡

위 사업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의견을 제시한다.

협의의견	동의
내 용	동의의 이유는 아래와 같음
○ 본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생활터전 상실 등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협의취득 노력을 기울이고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 불가피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소유자들에게는 해당사업의 내용,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 보상에 대한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통지하고 성실히 설명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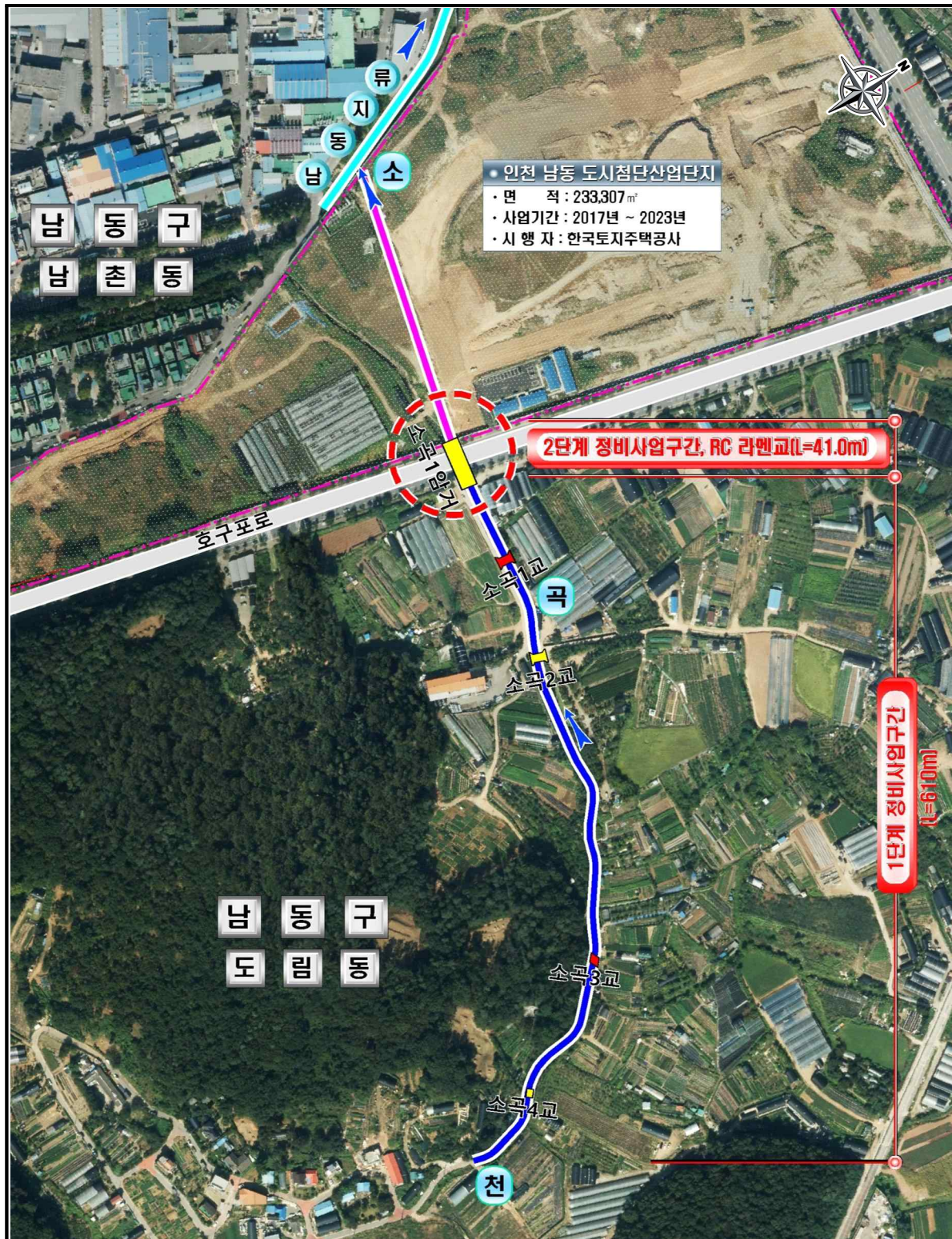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담당자: 주무관 김건영 (전화번호: 1544-9646 /팩스번호: 044-201-5693-4 /이메일:)

문서보안 : 비공개(5)
우편 50115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여진동) 정부세종청사 15-1동 701호
<http://www.molit.go.kr>

[붙임 2]

□ 위치도



[붙임 3]

편 입 용 지 집 계 표

구분	총계		국·공유지		사유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1	11,298	2	3,632	29	7,666
전	19	6,848	-	-	19	6,848
답	1	172	-	-	1	172
도	4	1,466	1	1,409	3	57
임	5	541	-	-	5	541
구	1	2,223	1	2,223	-	-
잡	1	48	-	-	1	4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호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시·구	읍·면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사 유 지				29필지			7,666								
	국·공유지				2필지			3,632								
	총 계				31필지			11,298								
1	남동구	도림동			440	10	임	1,117	102	이*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 ***동 ***호 (송도동 아이파크송도)					
2	〃	〃			440	11	임	1,133	154	전*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번길 **(논현동)					
3	〃	〃			443	2	전	3,069	168	이*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_** 4층					
4	〃	〃			449	3	전	2,327	1	이*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36 가좌마을용담이편한세상 ***동 ****호					
5	〃	〃			462	2	답	407	172	강*갑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타운 ***_****					
6	〃	〃			462	6	전	1,871	358	최*일	남촌동 649 품림아파트 ***동 ****호					
7	〃	〃			462	9	전	1,000	164	박*태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20 ***동 ****호(학익동 동아품림아파트)					
8	〃	〃			462	10	전	1,392	198	권*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동***호(논현동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9	〃	〃			462	17	전	2,122	532	이*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 ***동 ***호(괴안동 범박휴먼시아1단지)					
10	〃	〃			462	18	전	2,568	460	조*철	구월동 ****_*					
11	〃	〃			462	20	전	3,164	602	김*현	부평구 산곡동 255-1 뉴서울아파트 ***동 ****호					
12	〃	〃			462	21	전	2,172	504	고*문	인천 남동구 만수동 ****_**					
13	〃	〃			462	29	전	1,488	343	문*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동 ****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2)					
14	〃	〃			462	33	도	36	31	이*구	서울 성동구 신당동 **_***					
15	〃	〃			462	35	전	1,485	63	박*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43 ***동 ****호(부평동 부평엘에이치2단지)					
16	〃	〃			462	42	전	629	80	박*미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74번길 ** (작전동)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호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시·구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	〃		462	43	전	1,157	160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2, ***동 ***호(연수동, 경남아파트)				
18	〃	〃		463		전	6,387	1,787	박*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8-1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_****				
19	〃	〃		584	8	전	3,203	455	이*우	남구 도림동 ***				
20	남동구	도림동		584	11	전	2,413	358	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21	〃	〃		584	19	전	1,203	183	지*복	연수구 선화동 353 아주아파트 ***동 ***호				
22	〃	〃		584	59	도	26	23	이*필	***				
23	〃	〃		584	102	잡	414	48	지*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50 ***동 ***호 (하왕십리동 청계벽산아파트)				
24	〃	〃		585	1	전	2,444	117	김*자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마을풍림아파트 ***_***				
25	〃	〃		585	2	도	218	3	윤*식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 70 연화마을휴먼시아8단지 ***_****				
26	〃	〃		592	1	전	2,733	315	천*무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9-1 현대아파트 ***_****				
27	〃	〃		617		도	16,573	1,409	국(건설부)					
28	〃	〃		621	1	구	2,676	2,223	국(기획재정부)					
29	〃	〃		산85	6	임	330	9	배*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8 태평아파트 ***_****				
30	〃	〃		산87	5	임	13,223	249	강*석	논현동 ***-*				
31	〃	〃		산87	9	임	219	27	윤*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_** (도림동)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및규격	면적(m ²) 길이(m)	단위	수량	주소	성명	비고
	시	구	동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0-10	한전주				본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 ***동 ***호 (송도동, 아이파크송도)	이*자	
		〃	〃	〃	펜스		검정 메쉬천 (H = 2m)	33.7m					
		〃	〃	〃	출입문		철제 (H = 2m)	2.2m					
		〃	〃	〃	느릅나무				주	2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0-11	사철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번길 **(논현동)	전*진	
					뽕나무				〃	2			
					솔비나무				〃	2			
					참나무				〃	1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3-2	한전주				본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동, 4층	이*숙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	소나무				주	75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타운 *****	강*갑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6	한전주				본	1	남촌동 649 풍림아파트 ***동 ****호	최*일	
					출입문		철문	5.2m X 2m		1			
					무궁화				주	1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4.0㎡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20, ***동 ****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박*태	
					출입문		철제 (H = 2m)	3.0m					
					펜스		철제메쉬 (H = 2m)	21.6m					
					정원수				주	1			
					오가피				〃	2			
					사시나무				〃	2			
					사과나무				〃	1			
					개나리				〃	15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10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5.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88, ***동***호(논현동, 새터마을신일해 피트리아파트)	권*정	
					펜스		철제메쉬 (H = 2m)	12.0m					
					출입문		철제 (H = 2m)	3.0m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17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1.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 ***동 ***호(괴안동, 범박휴먼시아1단지)	이*우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8.2㎡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8.1㎡					
					한전주				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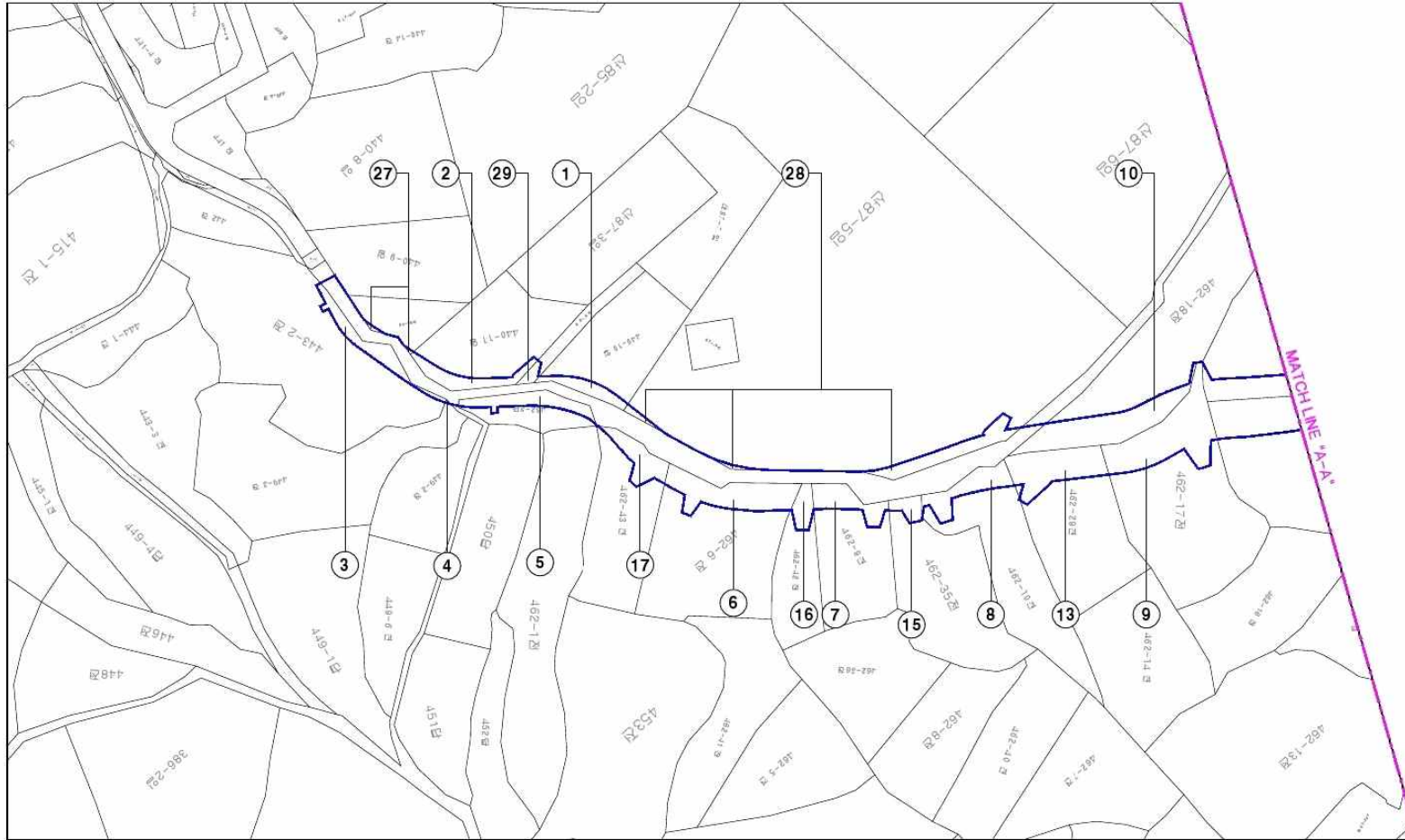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장물명	용 도	구조및규격	면적(m2) 길이(m)	단위	수 량	주 소	성 명	비 고
	시	구	동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18	오가피				주	7	구월동 ****-*	조*철	
					꽃나무				ㄴ	10			
					배나무				ㄴ	2			
					꾸지뽕나무				ㄴ	3			
					염나무				ㄴ	13			
					매화나무				ㄴ	22			
					뽕나무				ㄴ	2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0	구조물		판넬	33.4㎡			부평구 산곡동 255-1 뉴서울아파트 ***동 ****호	김*현	
					밤나무				주	1			
					포도나무				ㄴ	9			
					배나무				ㄴ	20			
					오가피나무				ㄴ	3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1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97.0㎡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고*문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68.1㎡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2.2㎡					
					한전주				본	2			
					물탱크				"	1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2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2.9㎡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94, ***동 ****호(송도동, 더센트럴파크2)	문*희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5.7㎡					
					구조물		판넬	19.9㎡					
					구조물		판넬	9.9㎡					
					자작나무				주	2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35	출입문		철제 (H = 2m)	5.2m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43, ***동 ****호(부평동, 부평엘에이치2단지)	박*근	
					펜스		철제메쉬 (H = 2m)	8.7m ×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42	구조물		판넬	24.9㎡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774번길 **(작전동)	박*미	
					출입문		철제 (H = 2m)	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정물명	용도	구조및규격	면적(㎡) 길이(m)	단위	수량	주소	성명	비고
	시	구	동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3	출입문	출입문	4.5m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18-1 새터마을신일해피트리아파트 ****~*****	박*용	
					조경석				개	45			
					구조물	원두막		8.8	㎡				
					구조물			33.4	㎡				
					구조물	닭장		13.3	㎡				
					관정	지하수 시설		1.0	㎡				
					비닐하우스			32.2	㎡				
					회양목				주	30			
					소나무					67			
					측백나무					339			
					주목					5			
					철죽					280			
					단풍나무					1			
					사철나무					3			
					향나무					4			
					보리수					1			
					소사나무					8			
					백일홍					2			
					능소화					3			
					복숭아					1			
					화살나무					14			
					느티나무					17			
					공작단풍					2			
					모과나무					4			
					상수리나무					3			
					간이화장실			1.4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용도	구조및규격	면적(㎡) 길이(m)	단위	수량	주소	성명	비고
	시	구	동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8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270.8㎡			남구 도림동 ***	이*우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64.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7.3㎡					
					구조물		판넬	46.5㎡					
					느릅나무				주	2			
					소나무				"	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11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	한*순	
					참나무				주	12			
					철엽수				"	5			
					배나무				"	12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19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199.6㎡			연수구 선학동 353 아주아파트 ***동 ****호	지*복	
24				584-102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메쉬천	39.5㎡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85-6	참나무				주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38 태평아파트 ***-***	배*호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87-5	밤나무				주	7	논현동 ***-*	강*석 외3인	
					참나무				"	12			

[붙임 4]

용지도(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사명 시설/공구	도로명 공공청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소 공 천			2022.08.	설계일기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2022.08.
DOHMA (주) 도허엔지니어링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주)한우

용지도(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 사 형	도립동 공공청 소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지도(2/2)
DOHMA(주)도화엔지니어링	시 설 / 공 구	소 공 청	2022. 08.	1:600	
도화엔지니어링	건 설 분 야	토 목	설 계 단 계	설 계 단 계	설 계 단 계